

제주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20가단109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A

피고B

변론 종결무변론

판결 선고2020. 5.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다 갚을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20. 2. 9.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라 주문과 같이 인용한다.

판사송현경

별지

1) 원고는 주문 제1의 나항 장래 부당이득 발생의 종기를 '피고의 점유 상실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로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2015다244432판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인용한다.